

미드페닌슐라 수도지구 (MID-PENINSULA WATER DISTRICT)

주거용 수도 서비스 종료 정책

효력일 2024년 12월 1일

1. 배경

본 정책은 특정 공공 서비스의 종료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법률(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60370 이하,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법(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10001 이하 및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6900 이하에 따른 미드페닌슐라 수도지구(Mid-Peninsula Water District, MPWD)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6900 이하, SB 998에 따라 제정된 수도 차단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은 MPWD 와 같은 도시 수도공급자와 도시 및 커뮤니티 수도 시스템의 요금 미납 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서면 정책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이 정책은 MPWD 의 웹사이트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서비스 지역 주민 중 10% 이상이 구사하는 기타 언어로 게시될 것입니다. www.midpeninsulawater.org

2.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 납부

MPWD에서 수도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은 우편으로 명세서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MPWD는 기한 내에 요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갖습니다. MPWD는 해당 고객의 미납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3. 요금 이의 제기

고객이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명세서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MPWD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MPWD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것입니다. 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가 모든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요금 조정을 할 권한을 갖습니다.

고객이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총괄 관리자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4. 주거용 서비스 종료 통지

MPWD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 및 서비스 종료 예정 통지를 제공합니다. 통지 수단은 우편, 현장 통지 또는 전화를 이용합니다. MPWD는 고객이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우편 또는 전화 연락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주거용 서비스 종료 방지

MPWD는 전화 (650) 591-8941을 통해 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오전 8:00 - 오후 4:30에 행정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락 가능하며, 본 약관에 규정된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방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종료를 막기 위해 납부 연기 또는 감액과 같은 대체 납부 방법, 대체 납부 일정,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PWD는 고객의 납부 방법을 결정하고 MPWD의 임의 결정에 따라 해당 납부 방법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상환 방법을 통해 12개월 내에 미납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 MPWD는 특정 상황에 따라 고객의 지나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더 긴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정: 2024년 12월 1일, 대체 2020년 2월 1일